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9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강승규 · 박성민
김기현 · 김석기 · 김은혜
김재섭 · 김 건 · 배준영
김민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가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,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영향을 국회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,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변동을 보이는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

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6조제1항, 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통화량 등 유동성 지표의 변화에 관한 사항
2. 기준금리 결정 등 주요 정책수단의 운용에 관한 사항
3.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, 물가 및 성장 동향에 관한 사항
4. 가계부채, 자산시장 불균형 등 금융안정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통화신용정책 및 거시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경우 변동의 주요 원인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

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 제출 절차, 제3항에 따른 주요 지표, 분석보고서 제출 절차 및 비공개 제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화신용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관한 적용례) 제9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6조(국회 보고 등)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제96조(국회 보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이 경우 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1. 통화량 등 유동성 지표의 변화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2. 기준금리 결정 등 주요 정책수단의 운용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3.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, 물가 및 성장 동향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4. 가계부채, 자산시장 불균형 등 금융안정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5. 그 밖에 통화신용정책 및 거시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
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 ③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

<신 설>

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
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
당하는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
경우 변동의 주요 원인 및 국
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
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
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다만,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
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
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
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
제출 절차, 제3항에 따른 주요
지표, 분석보고서 제출 절차 및
비공개 제출의 기준 등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로 정한다.